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5

교과서 속, 법으로 사는 세상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5

교과서 속, 법으로 사는 세상



법원행정처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펴내는 글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타인과 함께 공동체에서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방지하기도 하고 해결하여 주는 것이 바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재판’이고 그러한 ‘재판’을 하는 곳이 바로 ‘법원’입니다.

법, 법원, 재판제도에 관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청소년들 중에 법, 법원, 재판제도라고 하면 막연히 두렵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등의 발달로 법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우리 청소년들이 법, 법원, 재판에 관하여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 내용을 정확하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알려드리기 위하여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를 발간하였습니다. 책자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원 이야기’, ‘재판의 모습, 재판의 상식’, ‘우리나라를 변화시킨 재판 이야기’, ‘세계의 법원과 재판 이야기’, ‘교과서 속, 법으로 사는 세상’ 등 주제별로 구성된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청소년 여러분들이 재판과 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건전하고 성숙한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 책자를 통하여 인권과 법치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법, 법원, 재판이라는 주제를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신 집필진 및 이 책자가 발간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기 우 중

재미 2배, 효과 2배 교재 활용법!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바다에서 나온 순간 비로소 자신이 물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바닷속을 유영하는 물고기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법이라는 바닷속에 존재합니다.

학교에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하고 집을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법으로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 법과 만나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의 규격, 스쿨존 30km 미만 서행,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때, 선생님과 함께 하는 즐거운 수업 시간 등등.

이 교재를 통해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을 찾아보고, 더불어 교과서의 내용을 넘어 법을 만나는 체험을 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교재는 ‘기본권의 보장과 법’, ‘일상생활과 법’, ‘청소년 생활과 법’의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장마다 학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률 상식과 주제 탐구 및 수업 활동을 제시하여 선생님들께서 간단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부 ‘기본권의 보장과 법’에서는 인간이 가진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삼권분립이라는 장치가 왜 필요한지 그 역사적인 성립과정을 살펴보고, 그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더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복지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 분야의 노력을 알아봅니다. 제2부 ‘일상생활과 법’에서는 재판을 통한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법의 종류와 구조를 살펴보고,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등 대표적인 재판의 원칙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제3부 ‘청소년 생활과 법’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지위와 권리를 살펴보고, 학교생활과 가정생활 관련 법률을 통해 이를 확인해봅니다.

법은 생활 그 자체이며, 우리가 숨 쉬는 공기처럼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필진 일동

CONTENTS



Chapter 1

기본권의 보장과 헌법

1. 삼권분립제도와 사법부의 독립	11
2. 기본권의 보장	16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 복지	22
*알쏭달쏭 법률 상식	28
*놀이로 공부해요	30



Chapter 2

일상생활과 법

1. 법의 종류와 구조	33
2. 재판의 종류와 절차	37
*알쏭달쏭 법률 상식	49
*놀이로 공부해요	50



Chapter 3

청소년 생활과 법

1. 청소년의 지위와 권리	53
2. 안전한 학교생활과 법	57
3. 행복한 가정생활과 법	65
*알쏭달쏭 법률 상식	72
*놀이로 공부해요	74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 5



Chapter 1



교과서 속
법으로
사는 세상



기본권의 보장과 헌법

1. 삼권분립제도와 사법부의 독립
2. 기본권의 보장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 복지

* 알쏭달쏭 법률 상식

* 놀이로 공부해요



일러두기

본 장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삼권분립제도의 역사적 성립과정과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 다룹니다. 이 내용을 통해 삼권분립제도의 가치와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필수적인 장치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의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연계

- [10통사04-02] 인간 존엄성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파악하고, 준법 의식과 시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탐구한다.
- [12정법02-02]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하여 분석한다.

사법권은 독립되어 있다!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관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반대의 상황에 대한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가령 법원이나 법관이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판결이 공정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당사자는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질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장치가 바로 **사법권의 독립**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요청이며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이 어떠한 외부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사법권이 독립됨으로써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법부의 독립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몽테스키외의 구상, 삼권분립제도!



삼권분립제도가 몽테스키외의 아이디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몽테스키외가 구상하고 미국이 최초로 정치 체제에 적용한 **삼권분립제도**란 국가의 권력을 기능에 따라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 다른 기관에 그 권력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각각 국회, 정부, 법원이 행사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국가의 권력을 나누어 각기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게 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국가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의 권력을 나눠가진 각 기관들은 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호 견제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특정 기관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월권을 하는 경우, 권력 집행이 정의롭지 못한 경우에는 상호 견제를 통해서 이를 예방하거나 시정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국가의 권력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는 불상사를 막을



몽테스키외

제5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수 있고, 독재의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 체제와 국민들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있었다구요? 그렇다면 삼권분립제도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비밀 이야기 하나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삼권분립제도에 숨겨진 비밀



삼권분립제도의 주된 목적은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실질적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몽테스키외가 삼권분립제도를 구상하던 당시에 그 목적은 지금과 같았을까요? 흥미로운 점은 당시의 의도는 지금과 같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몽테스키외가 삼권분립제도를 구상하게 된 데에는 사실 프랑스 귀족들의 체제 유지 도모라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명예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들어보았나요? 영국의 명예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은 신대륙의 발전과 상공업의 발전을 등에 업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 계급이 봉건주의 체제 하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과 자유 보장을 요구하며 주도한 혁명입니다. 당시 자본주의의 발전을 등에 업고 혁명이 성공함에 따라, 국왕과 귀족들의 권위는 축소되는 반면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는 확대되었지요.

영국 명예혁명의 결과를 유심히 지켜보던 몽테스키외는 당시 프랑스의 귀족이었는데, 프랑스에서도 만약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면 자신을 포함한 모든 귀족들이 권력을 잃게 될



프랑스 혁명에 관한 화가 들라크루아의 작품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부르주아들이 혁명을 통해서 국왕과 귀족의 권력을 전부 차지하느니 자신들의 권력을 미리 나누주는 편이 현명하다고 판단하였지요.

그래서 국왕과 귀족들에게 집중되어 있던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세 가지로 나누고, 그것을 국왕, 귀족, 부르주아들에게 골고루 배분하게 된다면 부르주아들의 혁명

이라는 집단적 행동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프랑스 대혁명이 성공했지만요. 만약 권력을 요구하는 세력이 부르주아 외에 더 존재하였다면 삼권분립이 아닌 사권분립, 오권분립제도도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친숙한 삼권분립제도가 탄생하던 당시의 실제적인 배경입니다. 오늘날 삼권분립제도의 목적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어 보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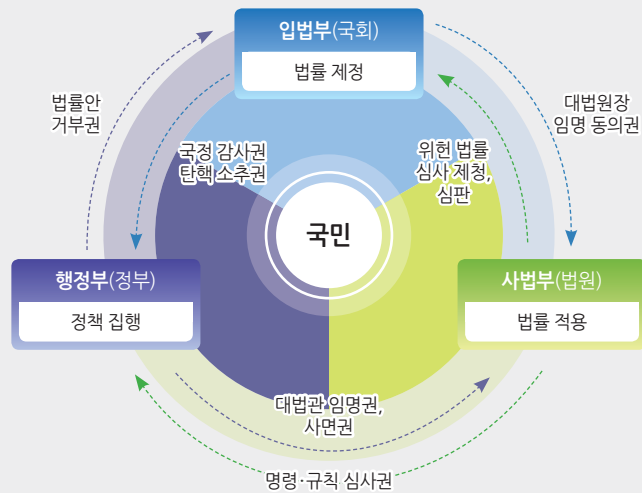
삼권분립제도의 진정한 가치



결국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은 처음 제안된 당시에는 귀족을 위한, 그리고 귀족에 의한 타협적인 대안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생배경이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의 삼권분립제도가 갖는 가치를 폄하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과 같은 권력분립제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분리된 권력기관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 기관이 한 정파에 의해 독점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요. 또한 반대

삼권분립제도 하에서의 견제와 균형



제5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시 그렇지 않더라도 기관 사이의 견제와 감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 기관에 지나친 권력이 주어져 비대해지는 경우에도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권분립제도는 제도상의 보장을 이룩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세 기관이 상호 견제와 감시를 효율적으로, 적절히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속에서 사법권의 진정한 독립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더 알아보기 I

영국의 명예혁명은 무엇일까요?



■ 윌리엄 3세 (William III, 1650~1702)

영국의 명예혁명이란 1688년 영국의 귀족 계층인 의원들이 당시의 국왕 제임스 2세를 국외로 추방하고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를 공동 국왕으로 새롭게 추앙한 사건을 말합니다. 제임스 2세는 즉위 이후 가톨릭교를 다시 부흥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 의회와 첨예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거기에 국왕이 강력한 전제주의를 추구하며 의회를 강제로 해산하는 등 제멋대로 나라를 통치하자, 의회에선 더 이상 이를 참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의원들은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를 국왕으로 초청하였고, 제임스 2세는 그들의 군대가 두려워 도망치고 맙니다. 이렇게 피를 흘리지 않고 국왕을 교체한 이 사건에 명예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명예혁명을 통해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의회주의가 꽃 피기 시작하고 입헌 군주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이 국왕에서 의회로 넘어온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본 장에서는 기본권의 의미와 성격 및 그 역사적 사례, 우리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에 대해 알아 봅니다. 이를 통해 나와 타인의 기본권이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의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연계

- [9사(일사)06-01] 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종류, 기본권 제한의 내용과 한계를 탐구한다.
- [9사(일사)06-02] 일상생활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국가기관에 의한 구제 방법을 조사한다.
- [10통사04-02] 인간 존엄성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파악하고, 준법의식과 시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탐구한다.
- [12정법01-03]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내용을 분석하고,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탐구한다.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제5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기본권이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천부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즉 실정법에서 말하는 권리라는 개념은 법률이 인정해 주는 경우에 한해서만 성립되는데, 이에 반해 기본권은 법률에 앞서는 천부적인 권리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국가도 법률로써 이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구분 지을 수는 있지만, 대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과 같은 근본적인 **인권**을 기본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권에 대한 사상은 근대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홉스의 자기보존권 또는 자연적 자유권, 로크의 재산권과 저항권, 루소의 평등권 주장 등이 대표

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서 구체화되는데요, 즉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 1776년 미국의 인권선언과 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을 통해 기본적 인권이 헌법에 표현되면서 실정법적인 권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기본권, 즉 인권에 대한 내용이 UN헌장(1945)과 세계인권선언(1948)에 분명하게 천명되어 있죠.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이와 같은 기본권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에 대한 내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조에서 제36조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하나하나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헌법 제37조입니다. 제37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말한 제11조에서 제36조에 이르는 기본권 관련 조항에서 그 명칭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편적인 상식과 사회적 합의에 비추어 인권으로 인정되는 것을 결코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편 제37조 제2항은 제1항과 내용 성격이 다소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기본권이라고 할지라도 무제한적으로 남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계를 가지게 되며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는 단 3가지, 즉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로 국한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기본권을 마구 침해할 수는 없겠네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할지라도 기본권은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할 수 없음을 명시해 뒀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지금까지 기본권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과연 기본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러

한 사례를 역사에서 무수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바로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해서 일어났던 사례들에 관한 것입니다.

기본권을 무시한 광기의 역사, 마녀사냥



마녀에 대한 사냥, 그러나 재판으로 포장되었던 마녀에 대한 종교재판은 중세 말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유럽 및 북아메리카 일대에서 행해졌던 것으로, 마녀나 마법 행위에 대한 추궁과 재판, 그리고 형벌 부과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근대 이전의 사회는 미스터리한 시대로서 정말 마녀가 존재했던 것일까요?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마녀재판에서의 마녀들은 정말 마녀가 아니라 정작 중요한 다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희생양이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가장 힘없는 존재인 가난한 집의 여성이 주로 마녀로 지목되곤 했었지요.

여기에는 당시 보수적인 기독교의 교리를 지키려 했던 재판관의 의도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의 재판은 참 모순적이었죠. 정의를 심판해야 할 재판을 통해 부정의를 실현한 것이니까요. 이렇듯 부정义的한 재판은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마녀를 판별하기 위해 여성에게 무거운 돌을 매단 뒤 호숫가에 빠뜨리곤 했습니다. 무거운 돌을 매단 채로도 물 위에 둥둥 떠 있게 되면 그것은 마녀라는 증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는 너무도 잔혹한 짓이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겠죠? 실상 힘없는 여성들은 마녀가 아니었기에, 무거운 돌과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마녀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럴 리 없겠지만 정말 물에 둥둥 뜰 수 있는 마녀라고 해도 상황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즉시 끌려 나가 화형에 처해졌을 테니까요. 결국 물속에 가라앉아도, 물 위에 뜨더라



제5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도(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 여성은 가혹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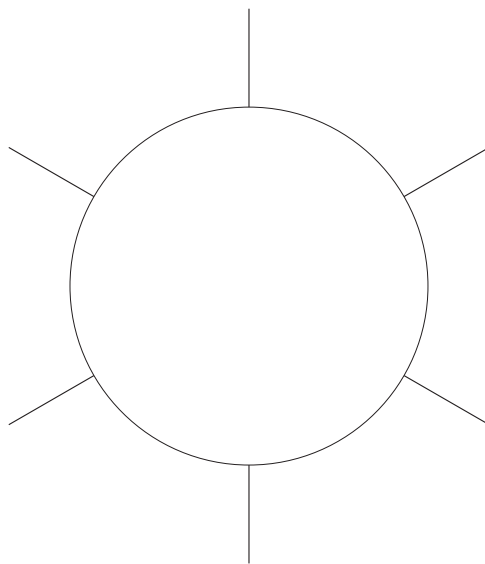
이처럼 기본권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힘없는 약자들은 가혹한 처사를 당하게 되며,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권이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노력을 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사법부인 법원입니다. 국민들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일은 없는지, 사인 간의 다툼으로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는 없는지 등을 판단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나서서 위헌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헌법재판소에 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은 이 내용을 통해서 기본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타인의 기본권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 보도록 합시다. 나만큼이나 소중한 타인의 기본권이니까요.



주제 탐구 활동 1

마인드맵 활동하기 | 원 안에 주제 관련 키워드를 적고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주제 탐구 활동 2

액션 러닝 기법 활용하기

〈활동순서〉

- ① 학급에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던 일을 노란색 포스트잇에 써서 칠판에 붙입니다.
- ②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한 일을 분홍색 포스트잇에 써서 칠판에 붙입니다.
- ③ 같은 색깔의 포스트잇을 함께 보면서 유사한 내용끼리 분류해 봅니다.
- ④ 파란색 포스트잇에 서로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써서 붙입니다.

(게시판 예시)

침해된 경우(노란색 포스트잇)	침해한 경우(분홍색 포스트잇)	해결 방법(파란색 포스트잇)

tip! 어떤 경우(또는 사례)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분류하고 생각해 보며 주제에 대해 탐구해봅시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문제 해결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tip! 생각의 범위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학급일 수도 있고, 가족 내일 수도 있고, 학교, 사회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좁은 생활 범위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넓혀가 보아도 좋겠지요?



주제 탐구 활동 3

법원의 판례를 찾아보고 기본권이 침해된 사례를 찾아보고 분석해 봅시다.

〈활동순서〉

- ①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② 기본권의 종류를 키워드로 판례를 검색합니다.
- ③ 판례를 함께 읽고 정리합니다.
- ④ 자신이 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했는지 다시 결론을 내려 봅니다.

tip! 너무 어려운 판결을 선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판결 사례도 있으니 교사가 적절하게 내용과 수준을 지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우리 모둠이 선택한 판례(사건번호 또는 주제)

- 판례의 내용 분석

- 충돌하는 기본권

- 판결의 요지

- 우리 모두의 판결



..... 일러두기

본 장에서는 소송구조제도, 성년후견제도, 진술보조제도의 목적과 실행방식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 복지 차원의 노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의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 연계

- [10통사04-03]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청소년의 노동권 등 국내 인권 문제와 인권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 [12정법04-02] 재산 관계(계약, 불법행위)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 [12정법04-03] 가족 관계(부부, 부모와 자녀)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돈 없어도 소송할 수 있는 소송구조제도



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려면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부과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인지대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 등을 소송 상대방(피고)에게 전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부담이 될 텐데요. 이 때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구조제이란 인지대와 송달료(이하 소송비용)를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법원이 소송비용 납입을 유예시켜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민사·가사·행정소송은 물론 가압류·가처분 신청에서도 관할 법원에 소송구조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면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 인데요(민사소송법 제128조). 먼저 자금능력 부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재산관계진술서를 제출해야 해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예금통장사본 등을 자료로 내면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누가 봐도 패소할 소송에 국가 재산이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 놓인 외국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난민, 결혼이주민, 임금채불근로자 등의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편적인 사법 권리구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 대비해서 사법부의 역할을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인간이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그러한 요건 중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행위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지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질병 또는 연령의 제한 등의 이유로 단독으로는 법률행위를 하기 힘든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의 법률행위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아 행위무능력자 본인이나 그 상대방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자와 그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성년후견인제도**와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제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반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성년후견인제도는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성년후견제도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구별됩니다. 특히 법정후견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알아볼까요?

피성년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9조). 2013년 성년후견인제도로 개정되기 전에는 금치산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가 어떠한 법적인 행위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질병을 앓고 있어서 본인의 완전한 의사에 의해서 법적인 행위를 하기는 힘들겠지요? 그러한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법적 행위를 도와주는 자를 선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년후견인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갖습니다.

피성년후견인으로 선정되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데요.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계약 등 어떠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러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일상생활용품 구매 등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

에서는 성년후견인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조).

또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피성년후견인이 능력을 회복하게 된다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민법 제11조).

즉,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질병을 치유하여 완전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되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종료심판을 청구하여 성년후견이 종료되고 다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한정후견인이란

이전에는 한정치산자로 불렸던 제도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2조).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지속적으로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말하지만, 제한정후견인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제한정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법률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그러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피성년후견인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용품 구매 등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한정후견인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3조). 제한정후견인의 종료 또한 피성년후견인과 마찬가지로 사망이나 그 한정후견개시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청구에 의한 심판에 의해 종료가 되게 됩니다.

피특정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특정후견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4조의2). 다시 말해, 피성년후견인과 제한정후견인과 달리 지속적인 후견

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일시적 사건이나 사무에 관하여만 후견인의 자격이 부여되는 후견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본인의 아파트를 매각하는 사무를 대신 처리하고자 할 때, 특정후견 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무가 종료하면 특정후견 또한 당연히 종료하게 됩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할 수 없으며,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서 하여야만 합니다.

임의후견인이란

장래 정신기능 약화에 대비해 스스로 후견인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후견은 후견계약이라고도 하는데, 후견을 받을 자(본인, 피후견인)와 후견인이 될 자 간에 자유로운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후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후견개시사유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미래에 후견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후견계약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임의후견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임의후견은 후견계약의 철회, 해지, 임의후견인의 해임 등의 사유로 종료됩니다. 단, 임의후견감독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관리의 계산, 긴급사무처리, 임의후견 종료신고 등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잘 이해가 되셨나요? 단독으로는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조력하기 위해 존재하는 성년후견인제도.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법률행위를 단독으로는 하지 못해 자신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제5권



진술보조인제도란?



사회적 약자들도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사회적 약자가 정신적·육체적인 제약으로 진술이 어려운 경우 명확한 사실관계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법원의 허가

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진술보조인제도**가 2017년 2월 4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진술보조인이란 당사자와의 관계가 밀접한 사람으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 가족, 그 밖의 동거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과 동석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법원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설명할 수 있고, 동시에 법원과 상대방의 진술을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보조인은 당사자의 진술을 조력하는 사람일 뿐이므로 당사자를 대신해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출석한 당사자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에 관한 진술을 할 수 없습니다. 소 제기 시나 소 계속 중 조력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술보조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보조인의 인적 사항 및 조력을 받을 필요성 등을 제출하면 법원은 진술보조 허가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기초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며, 해당 진술보조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지 진술보조인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시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진술보조인제도를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복지가 한층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간소음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5단계 방법



최근 사소한 문제로 대수롭지 않게 치부되었던 충간소음 문제가 중대하고 무시무시한 범죄로 번지는 섬뜩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대처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충간소음 갈등은 전문적이고도 적절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충간소음 피해 해결 <5단계 Solution> 함께 알아볼까요?

1단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

아파트 관리업체는 충간소음 분쟁을 적극적으로 중재할 의무를 갖습니다. 따라서 직접 해당 이웃을 다짜고짜 찾아가 따지는 것보다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불편함을 호소하고 지속적으로 문제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이웃사이센터¹⁾>의 전화상담 및 현장 진단을 통한 해결 유도

1단계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2단계는 '충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보다 전문적인 중재기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웃사이센터는 전문가의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통한 당사자 간의 이해와 분쟁 해결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이 기관을 이용해 피해상황이 명백하게 증명되었더라도 곧바로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중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얻은 피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이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단계 <관할 경찰서>의 경범죄 처벌법에 근거한 처벌

만약 소음 발생이 고의적인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에 의거하여 신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충간소음을 유발하고 있다고 추정되더라도 절대 맞서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발생시각 기록과 녹음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1)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 www.noiseinfo.or.kr

4단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피해 배상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생활 속 환경분쟁을 소송절차가 아닌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을 대신 입증해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단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최후의 수단은 역시 법원을 통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개시입니다. 그러나 4단계의 설명과 같이 층간소음 문제의 민사소송절차는 피해의 정도에 비해 비용적·시간적 문제가 크며 양측 재판당사자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될 수 있으므로 추천되는 해결방안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5단계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1~5단계 중 어떤 것도 아닌 ‘대화’와 ‘이해’입니다. 중재기관을 통해 이웃이 만나 함께 대화를 나누며 서로가 처한 상황과 쌓여온 오해로 서운했던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갈등을 해결하고 돈독한 이웃사촌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 그 진정한 해결의 ‘마스터 키’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놀이로 공부해요

Battleship

* 게임방법

1. 빈칸에 인권, 사법 복지 내용과 관련한 법률 용어를 써넣습니다.
2. 가로 또는 세로로 붙어 있는 두 칸을 묶어 하나의 전함으로 만듭니다.
3. 전함을 총 5척 만듭니다.
4. 돌아가며 단어를 부릅니다.
5. 불린 단어는 X 표시를 합니다.
6. 자신의 전함에 X 표시가 두 개 그어지면 전함은 침몰합니다.
7. 가장 많은 전함이 살아남는 팀이 이깁니다.



팀명

제 5 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Chapter 2



교 과 서 속
법 으 로
사 는 세 상



일상생활과 법

1. 법의 종류와 구조
2. 재판의 종류와 절차

* 알쏭달쏭 법률 상식

* 놀이로 공부해요



법의 종류와 구조



일러두기

본 장에서는 법의 존재 형태와 종류, 법의 단계를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법의 종류와 법의 적용을 위한 재판의 절차를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의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연계

- [9사(일사)05-01] 법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법의 목적을 탐구한다.
- [9사(일사)05-02] 규율하는 생활 영역 중심으로 법을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구분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각 영역의 특징을 탐구한다.

법의 존재 형태



법은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요? 질문이 이상하다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법’이라는 말에서 곧바로 생각나는 건 두툽한 법전의 모습일 거예요. 하지만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법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원칙’이라면 다른 형태의 규칙들도 있지 않겠어요? 어떤 규칙들이 있을지 한번 발표해보세요.

맞아요. 친구하고 하는 약속도 있을 것이고 어른을 만나면 인사를 해야 한다는 예절 같은 것도 있겠죠. 혹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거나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종교적 신념 같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법전으로 문서화되어 있지 않지만 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주 오랜 옛날 공동체의 규모가 작았을 때는 서로 이런 규칙들을 잘 알았을 테니 불문법의 형태로 법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회가 거대해지고 구성원의

수가 많아지면 서로 생각하는 관습이나 상식의 수준이 달라지고 또 생활관계도 복잡해지면서 추상적인 원칙들만으로는 사회가 유지되기 어려워질 거예요. 또 힘이 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원칙을 만들고 적용하는 경우도 많았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누구나 볼 수 있는 문서로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것을 **성문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법전들이 바로 성문법이에요. 요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이렇게 법전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관습이나 사람들의 상식 같은 불문법적 내용들도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영국, 미국 같은 국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들도 성문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법전은 있지만 불문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의 법적 효력도 인정하기 때문에 불문법 국가라고 불린다는 것을 기억해두세요.

법의 종류



법에는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게 나누어보면 국가와 개인 혹은 국가기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공적인 법, 즉 **공법(公法)**과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사법(私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아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면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이지 다른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럴 경우 **민법**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이때 민법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다루는 법, 즉 사법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만약 돈을 빌려간 사람이 처음부터 돈을 안 갚을 생각으로 속여서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사기라고 할 수 있겠죠? 사기는 범죄행위이니까 이런 행위를 그대로 놓아둔다면 사회전체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서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형법은 공법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공법에는 헌법, 형법, 행정법 등이 포함되고 사법에는 민법, 상법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분명히 개인 간의 문제인데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많고 일자리는 적은 경우 가게 주인은 아르바이트비를 한없이 낮출 수 있겠죠? 하지만 지나치게 낮아지면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아르바이트생과 주인의 사적인 계약

제5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관계에 국가가 개입해서 ‘최소한 시간당 얼마 이상은 주어야 한다.’고 원칙을 정해주었죠. 이걸 **최저임금제**라고 해요. 이건 분명히 사적인 관계이지만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부분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이런 법들을 **사회법**이라고 하고 **사법의 공법화**라고 말하기도 하죠.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아시겠죠? 노동법, 소비자법, 환경관련법 등이 사회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법의 단계



그럼 이런 법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법들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경우도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럴 땐 어떤 법이 더 기본적인고 중요한 법인지 미리 정해두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에도 단계가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법은 뭘까요? 맞아요, 국민 모두의 투표로 결정되는 **헌법**이 모든 법들의 기본이자 기준이 되는 법 중의 법입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결정되는 **법률**, 그리고 행정부에서 정하는 **명령**이 있고 그 아래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 범위내에서 정하는 **규칙** 등의 순서예요. 다시 말해 국회에서 어떤 법률을 만들더라도 그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무효가 되는 것이고 또 지방의회에서 만든 조례의 내용이 법률에 위배될 경우 역시 무효가 되는 식으로 법의 단계를 기반으로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주제 탐구 활동

1. 법의 존재 형태에 대해 알아봅시다.

분 류	의 미	대표 국가	장단점
성문법			
불문법			

2. 여러 가지 법들은 다시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분 류	의 미	대표적인 법
공 법		
사 법		
사회법		

3. 다음 법의 단계를 표시한 그림에서 빈 칸을 채워보세요.

법의 단계	만드는 곳
헌 법	
	국회에서
명 령	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규 칙	

4. 이런 법의 단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판의 종류와 절차



일러두기

본 장에서는 민사재판의 의미와 원칙, 형사재판에서의 인권보장 및 절차, 소년보호재판과 가사재판의 의미와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다루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의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연계

- [9사(일사)05-03] 재판의 의미와 종류(민사재판, 형사재판)를 이해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를 분석한다.
- [12정법04-02] 재산 관계(계약, 불법행위)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 [12정법04-03] 가족 관계(부부, 부모와 자녀)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 [12정법05-01] 형법의 의의와 기능을 죄형법정주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범죄의 성립 요건과 형벌의 종류를 탐구한다.
- [12정법05-02] 형사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탐구한다.

민사재판이란 무엇일까요?



재판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입니다. 각각의 재판이 무엇인지, 어떤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다보면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때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 하나가 재판이라고 이야기한 적 있었지요? **민사재판**이란 개인 사이의 권리 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을 말합니

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1,000만 원 빌렸는데, 제대로 갚지 않는다면 B는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A와 B가 잘 협의해서 돈을 돌려주고 돌려받는다면 좋겠지만, 종종 그렇게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 양 당사자가 자신이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소송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민사재판입니다. 하지만, 민사재판에서는 무조건 재판을 하는 것보다는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을 화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간에 해결해야 하는 분쟁을 국가의 힘을 빌려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입니다.

민사재판의 양 당사자는 서로 침례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을 잘 듣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몇 가지 원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판의 절차에 따라 심리를 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이 때 **공개심리주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심리란 재판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심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를 일반인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재판을 공개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허위진술과 허위증언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민사재판은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법원이 심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심판해 달라고 한 범위까지만 심판합니다. 이것을 **당사자주의의 원칙**이라고 하네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법원이 먼저 나서서 재판을 할 수 없고, 당사자가 해결해 달라고 하지도 않은 문제들까지 다 나서서 결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자료의 수집과 제출도 당사자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만 법원은 심리를 하겠지요?

민사재판은 개인 간의 다툼이고,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당사자가 제출하지도 않은 증거를 법원이 직접 찾아보거나 요구하는 식으로 함부로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요? 이것은 법원이 사건을 소극적으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주체가 두 당사자이고, 법

원은 두 당사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다 알아서 사건을 처리해 주고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을 해 줄 것이라고 마냥 기대하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인권 보장이?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을 다루기 때문에 자칫 공권력이라는 무서운 잣대가 남용될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형사상의 공권력이 함부로 남용되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는 장치를 많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는 모든 피의자나 피고인은 무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이 범죄인이라고 불리게 되고, 재판 확정 이전의 단계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불과하여 범죄인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국가(검찰)가 유죄임을 증명해야 할까요, 피고인이 자신은 무죄임을 증명해야 할까요? 무죄추정의 원칙을 떠올려 본다면 이 역시 답하기 쉽겠죠. 피고인은 어디까지나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자신이 무죄임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국가가 범죄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증명해야만 유죄임을 확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무죄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구속을 하지 않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것을 **불구속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조건 구속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길에서 칼을 든 강도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도 간단한 조사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귀가시켜야 하는 것일까요? 이처럼 예외적으로 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불구속 원칙의 예외로서 아주 엄격히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두고 있어요. 물론 이에는 법원의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구요. 이를 우리는 **구속영장**이라고 부르지요. 구속을 하게 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 한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역시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필요 이상으로 침해당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죠.

다음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도 있습니다. 이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이로 인해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는 범죄라는 이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역시 앞서의 원칙들과 마찬가지로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자신의 권력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장치로서 설정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제정하는 규범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미리 제정한 법률에 의거해서만 범죄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것이죠. 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정의를 위해서 국민의 대표들이 제정한 법률이 아니라면 마음대로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정의를 지향하는 공정한 재판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제도와 원칙들이 있음을 알 수 있지요? 이처럼 하나의 재판을 보다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절차



형사절차는 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에는 범죄의 혐의를 포착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수사절차와 함께,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처럼 형사소송 사건에 대한 재판을 **형사재판**이라 합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수행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체포·구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현행범이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주거가 없거나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영장이 발부됩니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어야 시작됩니다. 공소제기는 피해자 등이 사적으로는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상급 검찰청에 항고, 재항고하여

시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도 불기소처분이 고쳐지지 않을 경우 고소인은 (사법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고발인도)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벌금형에 처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상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도 또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공개로 진행됩니다. 먼저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준 다음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합니다. 그 후 검사 및 피고인·변호인의 최초진술, 증거조사, 피고인에 대한 신문,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판사는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심리를 종결하고 보통 2주일 후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그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지위가 바뀝니다. 피고인도 또한 피의자와 같은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헌법상 신속하고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집니다. 피고인은 공판절차에서 수사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70세 이상 고령자·농아자·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경우, 또는 빈곤하여 변호임을 선임할 수 없어 그 선임을 청구한 때에는 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이를 **국선변호인**이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를 필요한 경우에 판사가 구인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심문은 판사가 주재하며, 피의사실과 구속사유에 대하여 피의자와 변호인이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판사는 이러한 심문의 결과와 수사기록 등을 종합하여 구속요건에 해당하는지, 구속이 적절한지를 심사합니다.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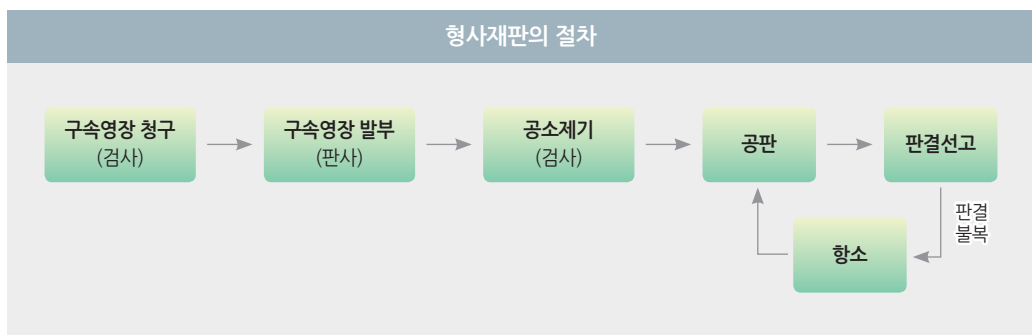
동거인, 고용주 등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되었거나, 또는 구속 이후에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생겼을 때, 공소제기 전까지 관할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심리하며,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을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서약서, 약정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석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석**이라 합니다.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을 갖습니다.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그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부당한 장기 구속의 방법으로 얻어지거나 자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것을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합니다.

피고인은 각각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혐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 판사는 유죄판결을 합니다. 형벌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습니다. 판사가 유죄의 심증을 얻지 못하면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경우 구속되었던 피고인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승복하지 못하는 피고인이나 검사는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제2심에서의 재판절차도 제1심 절차와 비슷합니다. 다만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도 7일 안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제5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수사 및 기소절차	
구속영장 청구 (검사)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관이나 검사가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판사)	현장에서 붙잡힌 범인이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피의자를 체포한 후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없거나 도망치거나 또는 증거를 없앨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영장을 발부합니다.
공소제기 (검사)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어야 시작됩니다. 한편, 검사는 벌금형에 처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판절차	
공판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공개하여 진행되며, 그 절차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다음,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후 검사, 피고인 등의 최초진술, 증거조사,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검사와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판결 선고	판사는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심리를 종결하고 보통 1~2주일 후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항소·상고 절차	
항소·상고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면 다시 제2심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제2심 판결에 또다시 불복하여 상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이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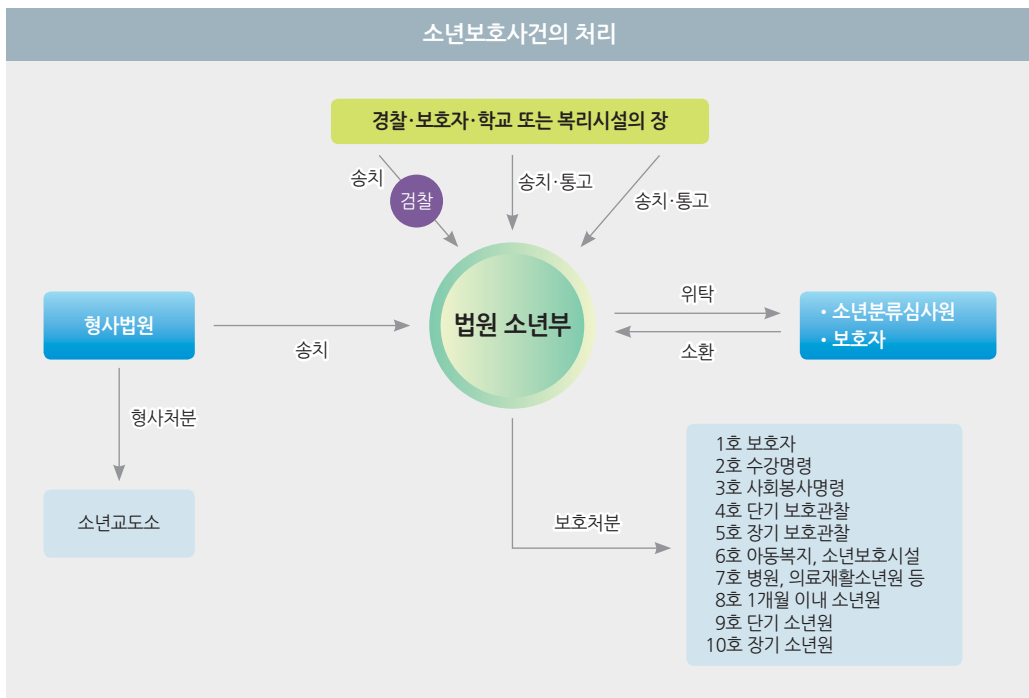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소년의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소년 보호 사건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은 크게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
촉법소년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우범소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따르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부모덕한 자나 유해한 환경에 접하는 등 그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경찰서장, 검사, 법원 등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 또는 비행은 저지른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비행소년을 발견한 소년의 보호자나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장 등은 수사기관 등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이를 직접 통고²⁾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우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경찰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
검찰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피의사건의 법원 소년부 송치
형사법원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피고사건의 법원 소년부 송치
보호자, 학교 또는 복지시설의 장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하였을 때 법원 소년부에 통고



제5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가정법원 소년부는 소년사건에 대하여 소년조사관으로 하여금 소년의 범행, 환경 등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한 다음, 그 조사보고 등에 기초하여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2) 소년보호재판 절차를 시작해 달라는 뜻의 통지입니다.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진단 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절차에서 소년은 보조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인은 소년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고, 적정한 심리·처우 결정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보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보호자나 변호사 이외의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데 보조인이 없다면 법원은 소년을 위하여 보조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았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마친 후 소년에게 적당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독과 보호를 맡기는 처분, 수감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장기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처분, 아동복지시설, 병원, 요양소, 소년원 등에 위탁 또는 송치하는 처분 등이 있습니다. 보호관찰 처분을 하는 경우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 상담·교육을 받도록 하고,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소년의 성품과 행동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내려지는 것으로 형사처분과는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즉, 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처분이기 때문에 소년의 장래 신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정보호재판이란 무엇일까요?



가정보호재판이란 일정한 가정구성원 사이의 가정폭력 등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일정한 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 검사 또는 법원은 그 사건을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해당지역의 지방법원)에 송치할 수 있고, 그 사건을 송치 받은 법원은 가정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보호처분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를 명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가정보호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한 다음, 그 조사보고 등에 기초하여 심리한 후에 종국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종국결정에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보호관찰처분, 감호위탁, 치료위탁 및 상담위탁처분 등이 있고, 각 처분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가사재판의 절차



가사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판결, 심판, 조정 등이 있는데, 그중 재판상 이혼청구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가사소송사건과 자식의 양육, 상속재산의 분할청구와 같은 가사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본안재판을 하기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조정은 수소법원,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관 1인과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조정위원은 가정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위촉하는데, 매년 변호사, 의사,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가사조정절차는 본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정이 성립되어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사건의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들에게 현상 변경 또는 처분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등 적당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고, 확정된 가사판결 등에

제5권



따라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주제 탐구 활동 1

1. 퀴즈를 풀어봅시다.

국민의 사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사건을 청구했을 때 어떤 재판을 받아야 할까요?

- ① 민사재판 ② 형사재판

민사재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즉 재판을 요구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 ① 원 고 ② 피 고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 ① 재판청구권 ② 피해자진술권

2. 다음은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재판 구성원들입니다. 각각의 역할을 연결해 봅시다.

- | | |
|---------|---|
| 판 사 . | • 국가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는 국가의 대리인 |
| 검 사 . | •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아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 |
| 피 고 인 . | •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위한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 |
| 변 호 인 . | • 재판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재판을 주재하고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지휘·감독권을 행사 |

3. 다음의 재판들과 이에 대한 설명을 짝지어 봅시다.

- | | |
|----------|--|
| 가사재판 . | •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에 대한 접근 제한, 사회봉사명령, 치료 또는 상담 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 |
| 소년보호재판 . | • 재판상 이혼, 위자료 청구, 실종선고,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등의 사건을 다루는 재판 |
| 가정보호재판 . | •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절도, 폭행, 무면허운전 등 비행을 한 경우에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 |



주제 탐구 활동 2

당신이 판사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판사가 되어 형량을 결정해봅시다. 다음 사건에 얼마만큼의 형을 부과할지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그 내용을 기록해봅시다.

믿는 도끼에 찍힌 발등 ... 종업원의 절도 행각 딜미

서부경찰서는 영업이 끝난 음식점에 침입해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26만 원과 식재료를 훔친 혐의(야간주거 침입절도)로 박모(29)씨를 입건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37분쯤 경기도 소재 모 음식점에 침입해 소형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26만 원과 식재료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했던 이 음식점의 화장실이 평소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토론 전 형량 선택>

☐ 벌금

☐ 집행유예

☐ 징역 6월 이하(실형)

☐ 징역 6월 초과 1년 이하(실형)

☐ 징역 1년 초과 2년 이하(실형)

☐ 징역 2년 초과 3년 이하(실형)

☐ 징역 3년 초과

• 집행유예란?

선고형이 벌금 500만 원 이하, 징역 3년 이하인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62조 개정·시행일 2018. 1. 7.)

예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살고 집행유예기간 2년 ⊗

징역 1년의 집행을 2년 동안 유예 ⊙

<네짝토론-4pairing card 작성하기>

각자 결정한 것을 바탕으로 모두 친구들끼리 의견을 모아봅시다.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래 빈 칸에 간단히 적어봅시다.

이름	이름
이름	나

tip! 실제 양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한가요?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http://www.scourt.go.kr/sc/exp/step.work?step_id=03&case_id=02



알쏭달쏭 법률상식

내 통장으로 잘못 송금된 돈! 모르고 사용했다면?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돈! 돈은 편하게 살기 위해 만들졌는데, 지금은 돈 없이는 아예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지요. 그런데 내가 직접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돈을 둘러싼 단 하나의 행동 때문에 자칫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통장에 들어온 남의 돈, 모르고 썼는데요?

엄청난 게임광인 무생각 씨는 최근 출시된 게임기를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번 달에 돈을 다 써버려서 게임기를 살 돈이 없었지요. 그런데 통장 잔고를 확인해보니, 어라? 모르는 사람이 무생각 씨의 통장에 돈을 송금시켜두었네요. 아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서 무생각 씨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한 모양이에요. 무생각 씨는 “내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니까 내꺼지!” 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 돈을 게임기를 사는 데에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무생각 씨의 집에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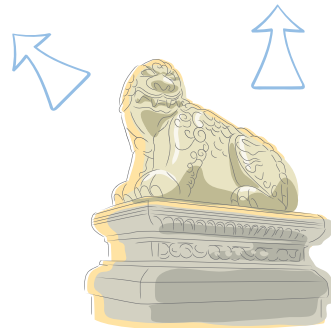
우리나라 형법 제355조를 보면, 횡령죄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생각 씨의 경우처럼 착오 송금된 돈을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의 신의칙상 보관관계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라고 해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송금한 사람에게 다시 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돈이 통장에 들어왔다면, 은행에 전화해서 바로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놀이로 공부해요

민사재판 +2	증거재판주의 +5	공개심리 -5	가정보호재판 +1	불리한 진술 거부권 +3
구속영장 청구는 누가? -5	충간소음 해결5단계 +4	범죄소년의 나이 -8	영장주의 -5	촉법소년의 나이 +4
피고인 -1	상고 +3	형사재판 +6	구속영장 발부는 누가?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
무죄추정의 원칙 +3	가사재판 -7	국민참여재판 -8	소년재판 +8	항소 +7
공소제기 +3	죄형법정주의 +6	무죄추정의 원칙 +6	기소독점주의 +5	소액사건 심판법 -4

제5권

 **tip!** 해태상 위에 동전을 올리고 손가락으로 튕깁니다.
동전이 위치하는 칸의 용어를 설명하고 점수를 합산합니다.
점수 배분, 용어 배정은 교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Chapter 3



교과서 속
법으로
사는 세상



청소년 생활과 법

1. 청소년의 지위와 권리
2. 안전한 학교생활과 법
3. 행복한 가정생활과 법

* 알쏭달쏭 법률 상식

* 놀이로 공부해요



일러두기

본 장에서는 청소년의 법적 지위,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과 제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이유와 청소년의 일상생활 속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의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연계

- [9사(일사)01-01] 사회화의 의미와 과정을 이해하고, 사회화 과정에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특징을 설명한다.
- [9사(일사)06-01] 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종류, 기본권 제한의 내용과 한계를 탐구한다.
- [10통사03-02]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청소년의 삶



개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는 개인의 삶 속에서 발생하고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법적 지위와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청소년의 삶을 살펴보기로 해요. 먼저, 청소년은 가족의 구성원이지요. 청소년은 성장하면서 가족으로부터 지적·정서적·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벗어나 자립하길 원하면서도 여전히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청소년은 학교 구성원, 즉 학생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요. 학생으로서 청소년은 많은 것을 학습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성을 기르지요. 또한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고 잠재력을 계발하지요. 하지만 입시교육, 학교폭력 등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 좌절과 소외감을 경

험하기도 해요. 그리고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요. 우리나라는 청소년에게 선거투표권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민주주의의 발전, 정보사회화, 시민참여의 증대에 따라 청소년들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시민으로서 참여하고 있어요.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청소년들도 증가하고 있지요. 그래서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을 인정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조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청소년은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향유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요. 세계시민으로서 청소년은 특정 국가나 문화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법적 지위와 보호



청소년은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하지만 성인에 비해 아직 경험과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로운 환경에 노출되거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국가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령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와 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각종 해로운 매체와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을 위반하거나 청소년 대상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5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한편 우리 민법상 청소년은 행위능력³⁾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휴대전화를 사거나 어떤 서비스에 가입하는 등의 계약을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속임수를 써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거래상대방을 더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법률행위를 취

3) 단독으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소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용돈이나 선물과 같이 법정대리인이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사용을 허락한 재산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관련 법

청소년 기본법 / 청소년 보호법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 교육기본법 / 근로기준법 / 학교보건법 / 아동복지법 / 국민체육진흥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공연법

청소년의 연령대별 행위 능력

- 14세 : 형사상 책임 능력 있음
- 15세 : 제한적으로 취업 가능
- 16세 :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취득 가능
- 17세 : 주민등록증 발급, 단독 유언 가능
- 18세 : 부모의 동의 얻어 혼인 가능,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가능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계약의 효력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청소년이 한 계약은 일단은 유효하지만, 후에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하여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거짓말 등으로 자신이 성년이라고 하거나 부모님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서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주체로서의 청소년



정보화 사회라는 말을 들어보았지요? 정보화 사회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중심이 되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적인 수준이고,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지요. 인터넷에 의해 만들어진 사이버 공간에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생산·전달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뛰어난 정보탐색능력과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수성을 바탕으로 사이버 공간의 주체로서 다양한 정보를 향유하고, 또 직접 생산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때로는 사이버 공간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인데요. 사이버범죄는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으로 인해 무심코 또는 큰 죄책감 없이 저질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사이버범죄의 피해는 무한대로 커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범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이나 컴퓨터에 침입하거나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타인의 계정 도용, 타인의 데이터 유출, 해킹,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 개인정보나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침해하는 행위, 사이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스팸메일 대량 발송 등), 불법적인 콘텐츠를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음란물 배포 및 판매, 도박 사이트 개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등) 등이 모두 사이버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연루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불법 악성 프로그램을 구해서, 호기심에, 남들이 하니까 등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사이버범죄를 무심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악성 댓글을 달기도 하고, 사이버 왕따, 일명 ‘사이버불링(cyberbullying)’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메신저나 모바일 채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집단 따돌림이 발생하고 있지요. 또한 사이버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게 위한 다양한 예방 수칙도 알아 두어야겠지요?

여러분,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도 엄연한 범죄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사이버범죄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揭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307조)입니다. 즉 명예훼손이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구분	형법상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 유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유포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의 표를 보면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일반적인 형태의 형법상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보다 무거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피해의 범위와 규모를 훨씬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러두기

본 장에서는 학생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안전한 학교생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학교폭력과 법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학교생활과 학교폭력 관련 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탐구하며,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의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연계

- [9사(일사)05-03] 재판의 의미와 종류(민사재판, 형사재판)를 이해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를 분석한다.
- [12정법05-01] 형법의 의의와 기능을 죄형법정주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범죄의 성립 요건과 형벌의 종류를 탐구한다.
- [12정법05-02] 형사 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탐구한다.

학생으로서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교 학생으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인간이 누리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와 함께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으로서 갖는 기본적인 권리에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학습권**을 들 수 있겠네요. 학습권은 학생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학습권은 학생이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학습권에 따라 학생들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교육에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아동이나 청소년은 국가가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에 학습권에 대한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학생으로서 **학생 인권**을 보장받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2조제1항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라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인권과 구분되는 학생 인권의 보장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 적합한 학습 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학교생활에서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학교생활기록 등의 정보가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등을 갖습니다.

물론 학생의 권리가 무제한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학교는 교육활동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권리행사의 범위는 학교의 고유한 권한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학생과 학교의 권리와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또한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의 일정한 의무도 갖습니다. 학생은 학습자로서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이 학생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고, 교칙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을 둘러싼 법과 제도



등하굣길이나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전체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보호·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볼까요?

학교 앞을 지나갈 때 ‘스쿨존(School Zone)’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을 본 적 있을 것입니다. **스쿨존**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스쿨존에는 안전표시, 도로 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등이 설치되고 자동차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되며 주·정차도 금지됩니다. 스

제5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법과 제도들, 함께 찾아볼까요?



어린이 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쿨존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공간인 만큼 스쿨존에서 신호위반, 과속운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불법 주·정차 등의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다른 일반 도로에서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에는 학생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구역 내에는 노래방, 주점, 오락실, 만화방, PC방 등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그린푸드존)제도**를 운영하고 있

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학교 매점과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통학로에 있는 문구점, 슈퍼마켓 등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건강저해식품, 정서저해식품, 부정·불량식품, 유해첨가물 식품 등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 구역 내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하거나 진열·판매하는 업소의 식품 위생은 관할 기관에 의해 주기적으로 관리됩니다.

학교폭력과 법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친구들과의 다툼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이니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피해를 당하는 학생은 건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집단 따돌림 등으로 괴로움을 겪는 학생들의 문제가 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제정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흔히 하는 착각은 학교폭력이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심각한 물리적 폭력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대단히 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워낙 많은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어서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조항의 뒷부분에 있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라고 언급되어 있는 부분에 주목하면 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정신상의 피해’도 학교폭력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폭력’이라고 느껴지는 것이라면 일단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손가락질을 하거나 SNS에서 흉을 보는 것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말을 인터넷으로 유포하면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일까지 왜 처벌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해자나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일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고통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을 통해 이를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2015년 8월 경북 안동의 모 고등학교에서 투신자살한 학생의 경우 급우들의 면박주기, 집단 따돌림 등이 원인으로 밝혀졌는데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밝혀진 학교폭력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침 뱉기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 장난과 괴롭힘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기에 앞서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헤아려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욕설도 학교폭력일까?

‘찐따’ 등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돌려 따돌리는 것도 학교폭력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서울 J중학교 A양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린 봉사명령 및 상담치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해 8월부터 동급생 B, C양 등에게 ‘찐따’ 또는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 다른 친구들과 함께 B, C양을 따돌렸다. 이에 같은 해 11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교내 봉사 5일 및 상담치료 처분을 받아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양 측은 특히 법정에서 두 사람에 대한 욕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린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 내지 모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욕설 문자와 왕따 행위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않고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며 “형법상 성립여건 구비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보호 및 교육 측면에서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일보, 2014. 7. 24.

학교폭력의 처리절차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각 공공기관과 학교당국이 협조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① 신고, 인지	신고는 학교폭력의 피해자나 제3자가 관계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하고 인지는 관계기관에서 직접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의 경우 117번으로 전화를 하면 신속하게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됩니다. 학교폭력이 확인되면 학교장은 즉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격리하고 공식적인 처리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② 사안조사	학교폭력 신고나 인지 후 사안이 중대할 경우 가해학생을 즉시 출석정지 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사안을 조사하고 가해자, 피해자, 관련 학생과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학교장에게 보고합니다.
③ 조치결정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자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여부에 대한 판단,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심의·의결하고 가해자, 피해자 간의 분쟁조정도 진행합니다. 자치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처분을 결정하게 되면 조치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행하는 것으로 학교 내에서의 처리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조치 결과는 학생부에 기록되고 가해학생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한 2019년 9월부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자체해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정된 조치에 가해자 측이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의 사법적 절차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사법적 구제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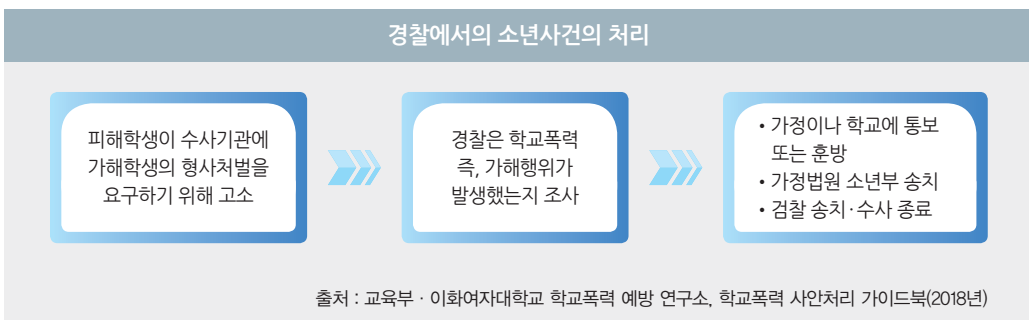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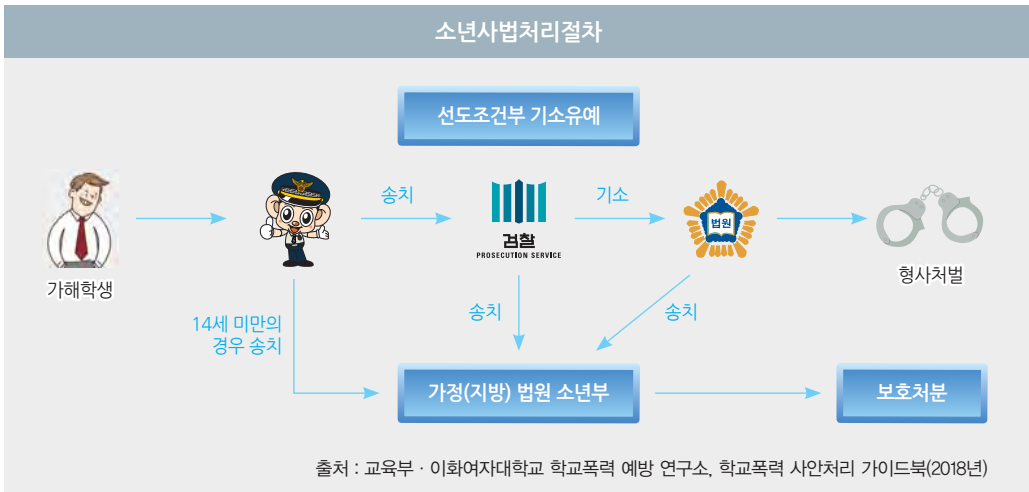
자치위원회가 법률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고 학교의 장이 조치를 하었는데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학교 재학생과 학교는 공법 관계에 해당하므로 재학생은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조치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립학교의 경우라면 재학생과 학교와의 관계가 사법관계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피해학생의 경우는 위에 설명한 자치위원회의 조치와 별도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선도, 교육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형법 또는 소년법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폭력 행위가 형법상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형사책

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이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만 10세 이상이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데, 만 10세 미만이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모두 불가능합니다.

10세 미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촉법소년)	14세 이상 (범죄소년)
보호처분 불가	보호처분 가능	
형사처벌 불가		형사처벌 가능

피해학생이 형사적 구제를 요청하면 다음과 같은 소년사법처리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피해학생은 민사소송을 통해 폭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학교장 및 교사,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 무료법률상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소송서류의 작성 및 소송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민사조정절차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제5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일러두기

본 장에서는 가정폭력의 의미,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아동학대의 보호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를 통해 가정과 관련하여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이해하고,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봄으로써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법의 기능에 대해 탐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의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연계

- [12정법04-03] 가족 관계(부부, 부모와 자녀)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가정폭력이란 무엇일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안의 물건을 부수고 어머니를 때리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죠. 이런 상황들은 가정 내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폭력을 당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신체상에 눈에 띄만한 피해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기도 하죠. 우리는 어떤 법률적인 방법을 통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자녀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것 또한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폭력은 혼인 신고를 한 부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나 사실상의 양자관계, 같이 사는 친척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률에 의해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되고 어떤 법률을 통해 가정폭력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법률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는 알게 된 경우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교육과 보호 또는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의

경우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갖습니다.

이렇게 가정폭력범죄가 진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을制止하고 피해자를 분리하여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 때 피해자가 긴급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다쳤다면 즉시 의료기관으로 수송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다면 경찰관의 신청이나 검사의 직권으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가해자를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거주공간에서 격리하거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로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거나,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 위탁하거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들을 말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법원에서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밖에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장치나 기관들이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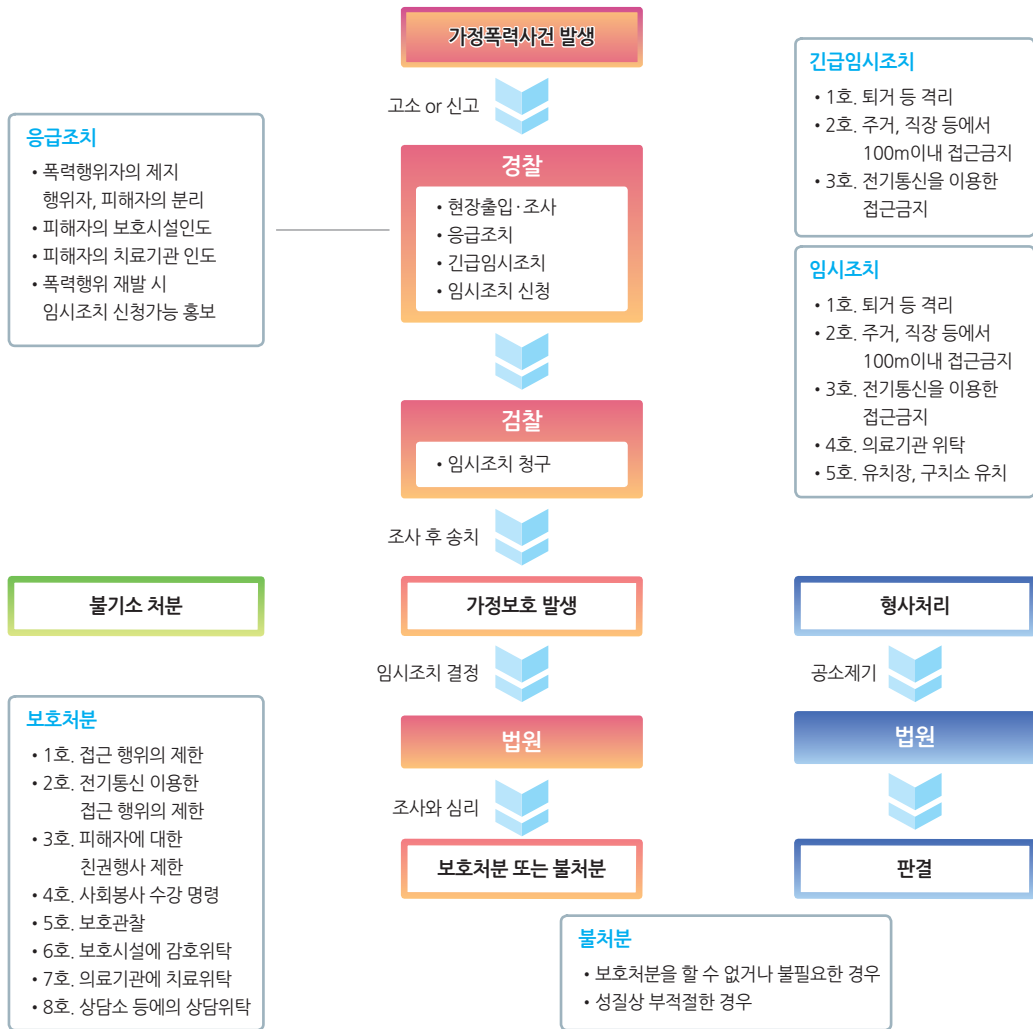
제5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신고가 접수된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이 사건은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으로 송치됩니다.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하거나 심리할 때 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가정 상황, 범죄의 동기나 실태 등을 규명합니다. 물론 앞서 말한 임시조치결정에 대한 판단도 법원의 기능입니다.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할 때 가사조사관을 둡니다. 가사조사관은 판사의 명령을 받아 가해자와 피해자, 다른 가족구성원의 성향이나 행적, 경력, 가정환경과 가정폭력의 동기나 원인 등의 사항들을 조사합니다. 가정보호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2019년)

이러한 재판절차를 거쳐 판사가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보호처분 외에도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학교를 다닐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지원하게 됩니다. 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피해아동이라 하더라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어야겠지요?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과 같은 긴급전화센터와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여 가정폭력의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담당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탁받는 보호시설은 6개월 이내 범위에서 머무를 수 있는 단기보호시설과 2년 내에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장기보호시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보호시설에서는 숙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정폭력범죄 중에서도 최근 아동학대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가정폭력의 유형 중에 아동학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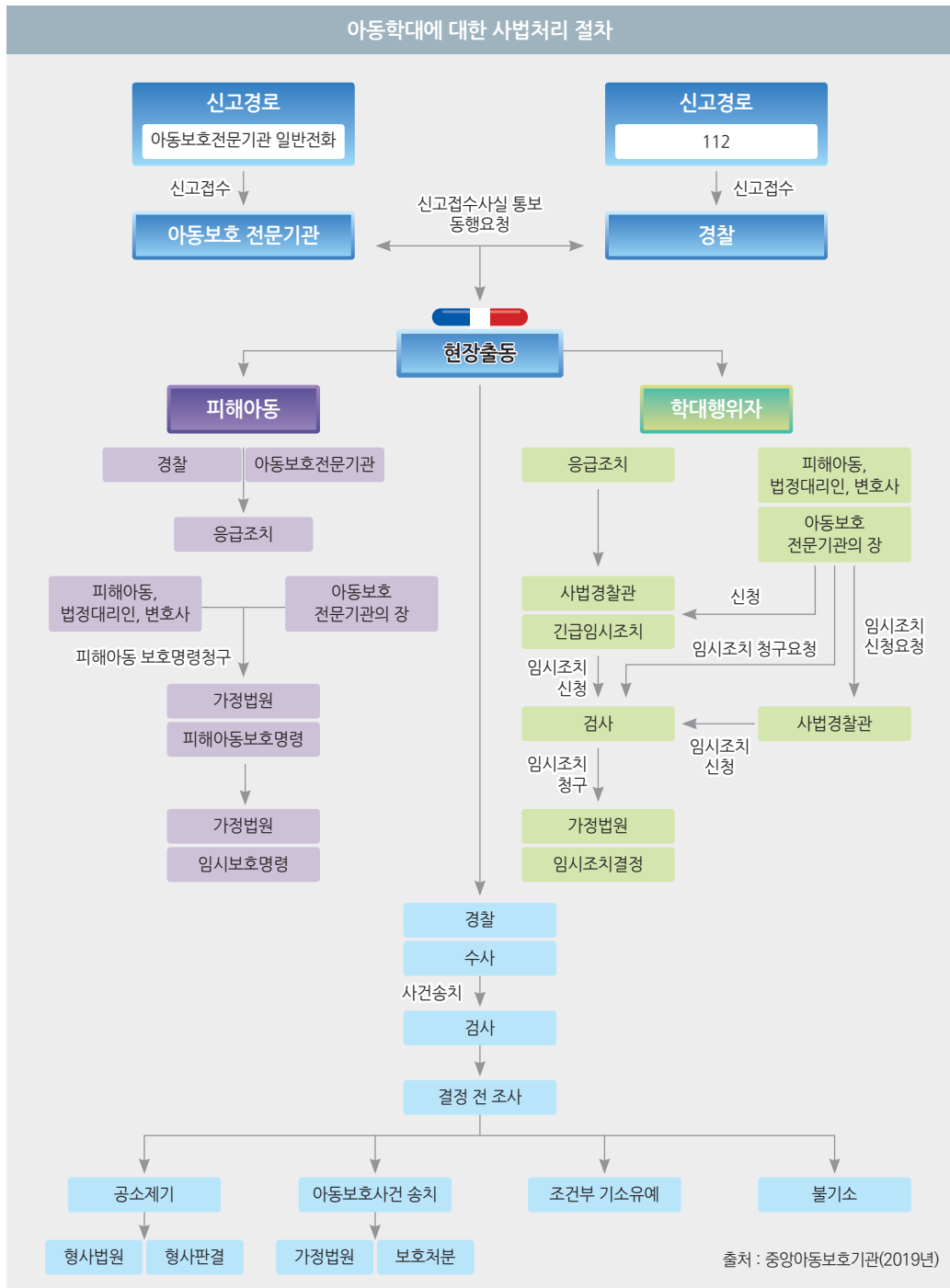
아동학대의 의미와 보호



가정폭력에 포함되기도 하는 아동학대는 상대적으로 저항할 힘이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별도로 제정된 것은 그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죠.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는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인의 폭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5년 통계에서 아동학대행위 11,715건 중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행위가 9,348건으로 대부분 부모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고려해보면 아동학대가 가정생활에서 중요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은 분명하겠죠.

아동학대범죄를 처리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가정폭력범죄를 처리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의료인, 유치원 교사, 학원 강사 등의 사람들은 신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아동

학대 사실을 접수한 수사기관은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여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관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임시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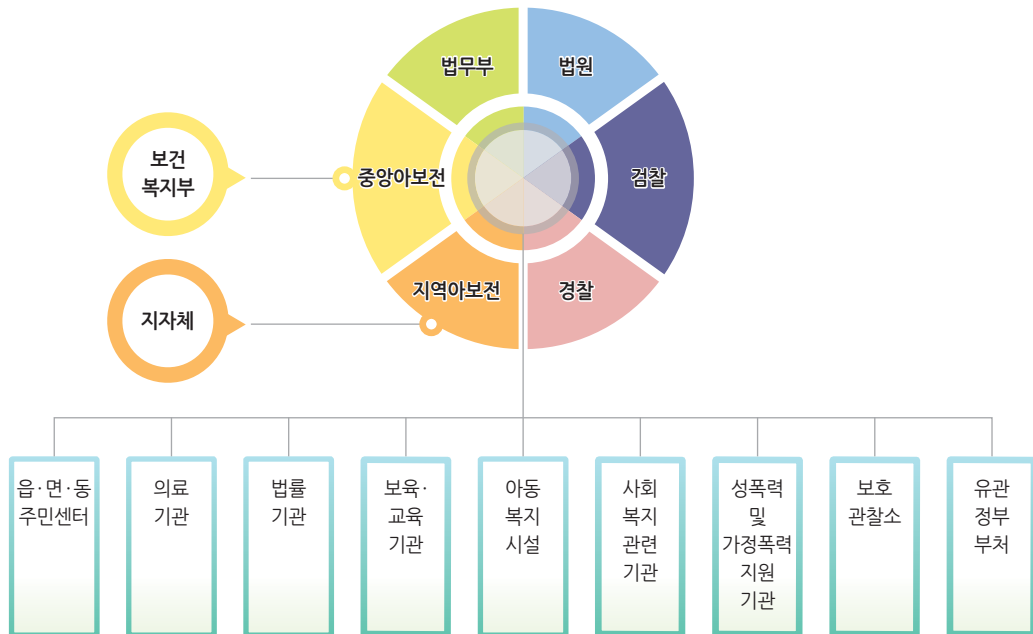


이러한 과정들은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 현장출동 및 조사업무 수행
-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행위자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 신청,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등, 진술조력인, 국선변호인 선정신청 지원 및 신뢰관계인 동석 등, 그 외 필요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복지법 제29조)
- 아동학대범죄 행위 제지 및 아동학대행위자 격리, 피해아동을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등 응급조치
- 아동보호사건 송치 시 아동보호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 개진
- 임시조치,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처분 등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위탁 수행
- 아동학대예방관련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입력 및 보존

이처럼 법원과 수사기관,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이 있기 때문에 은폐되기 쉬운 아동학대가 드러나고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기관 간의 연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2019년)

지금까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의미와 처리절차,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폭력을 당한만큼 그 정신적인 피해나 심리적 문제는 심각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아동학대의 경우 여기에 더해 아직 제대로 피해당한 사실을 인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진술하기 어려운 어린 나이일 경우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위한 보호와 지원 시스템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도 주위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문제를 늘 경계하고 발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알쏭달쏭 법률상식

초등학생이 오버워치를 하면 처벌받을까?

초등학생인 철수는 친구와 PC방에 가서 같이 할 게임을 찾다가 요즘 유행하는 게임인 '오버워치'가 너무 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회원가입을 하고 접속하려고 하자, '게임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 게임은 15세 이용가 게임물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며 접속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버워치가 너무 하고 싶었던 철수는 집에서 부모님의 휴대폰을 이용해 부모님의 명의로 된 아이디를 만들고 다시 친구들과 오버워치를 하기 위해 PC방으로 갔습니다. 자리를 잡은 이후 드디어 오버워치에 접속해 게임을 하려고 하는 철수! 과연 철수가 오버워치를 하는 행동은 법적 처벌을 받는 행동일까요?

"이용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을 하면 처벌받을까?"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법이 게임물의 이용등급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게임물의 등급지정과 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바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인데요, 이 법에서는 게임물의 등급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중략)...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②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게임산업법에서는 게임물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려면 사전에 등급분류를 반드시 받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다양한 게임들을 실행할 때는 항상 '전체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의 등급분류 마크가 함께 뜹니다.

그렇다면,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용등급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 처벌되는 것일까요? 게임산업법에서는 등급구분(15세, 청불 등)을 받은 게임물을 해당 등급에 맞지 않는 연령을 가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실제로 동법 제46조에 의해 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제5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은 PC방이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기도 했지요. 그렇다면 연령 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을 이용한 수많은 학생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특별한 조치 없이, 조사 후 '귀가조치'만 이루어졌습니다. 즉 처벌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법에서는 연령 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PC방에서 초등학교생들이 오버워치를 한다고 해서 신고를 해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PC방 사장님이 처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인데요. 개정되기 전의 법에서는 '모든' 등급분류를 위반하여 제공한 사람을 처벌했지만 새로 시행되는 법에서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한 자에 한해서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에서도 개정 이후로는 12/15세 이용가 등급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의 근거가 사라졌기에 앞으로 해당 게임의 신고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오버워치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신고해도 경찰은 출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조항이 변경된 것이 초·중학생들이 PC방에서 관련 게임을 할 때 사장님들이 이들을 그냥 방치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명시하고 있는 '영업 정지 및 영업 폐쇄'와 관련된 조항(모든 등급분류에 맞지 않는 게임물 제공에 대해 영업정지, 폐쇄하는 조건을 정한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형사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나 민원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은 유효합니다.

이런 이유로 PC방 사장님들은 '청소년들이 이용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을 하고 있으면 발견 즉시 컴퓨터를 꺼버린다!'는 안내문을 붙이는 등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등급을 정해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게임을 즐기는 초·중학생들은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PC방 사장님들은 초·중학생 친구들이 합법적으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르게 선도해준다면, 우리 모두가 즐거운 게임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놀이로 공부해요

숨은 그림 찾기 O, X 퀴즈

다음 그림판에 무엇인가 숨어 있어요. 문제를 풀어보고 ○에 해당하는 번호만 색칠해 보세요.

번	법을 상식과 일치하면 ○, 틀리면 x	○·X
1	예) 스쿨존에서는 자동차 속도를 30km미만으로 서행해야 한다.	○
2	예) 청소년이 근로 가능한 나이는 15세 이상이다.	○
3	예) 청소년은 성인보다 낮은 최저 임금을 적용받는다.	X
4	예)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일주일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
5		X
6		○
7		X
8		X
9		X
10		○
11		X
12		○
13		X
14		X
15		○
16		X
17		○
18		○
19		○
20		○

제5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13	13	13	10	10	10	13	13	13	13	13	13	13	13	6	6	6	13	13	13
7	11	10	13	13	13	6	13	6	6	6	6	13	6	13	13	13	6	11	7
7	11	10	13	13	7	6	6	8	8	8	8	6	6	13	13	7	6	11	11
7	11	6	7	6	6	8	8	8	8	8	8	8	8	6	6	7	6	11	11
11	11	7	6	7	7	7	7	7	7	7	7	7	7	7	7	6	3	3	3
11	11	7	6	7	7	7	7	7	7	7	7	7	7	7	7	6	3	3	3
11	11	6	7	7	7	7	7	7	7	7	7	7	7	7	7	7	6	5	5
11	2	8	8	8	8	8	8	16	16	16	16	8	8	8	8	8	8	1	5
11	2	8	8	8	8	8	8	16	16	16	16	8	8	8	8	8	8	1	5
11	2	14	14	18	18	18	18	16	16	16	16	4	4	4	4	14	14	1	14
17	11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3	3	3	3	14	14	2
17	11	14	14	14	1	1	14	14	14	14	14	14	4	4	3	14	14	14	2
17	11	14	14	14	1	1	14	14	14	14	14	14	4	4	14	14	14	14	2
17	11	14	14	14	14	9	9	9	9	9	9	9	9	9	9	9	9	9	20
17	11	14	14	14	14	9	9	9	20	15	9	9	9	9	9	9	9	9	20
17	11	11	14	14	14	9	9	20	20	15	15	9	9	9	9	9	9	9	20
16	12	11	14	14	14	9	20	9	9	9	9	15	9	9	9	9	9	12	11
16	12	11	14	14	14	14	20	9	20	15	9	15	9	9	9	9	9	20	11
16	12	16	11	14	14	14	14	20	5	5	15	9	9	9	9	9	9	20	11
16	16	18	11	14	14	14	14	14	14	8	8	8	8	8	8	8	12	14	11
16	16	18	16	19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2	14	11
16	16	16	18	19	5	5	5	5	5	5	5	5	5	5	5	12	5	14	5
16	16	16	16	19	3	3	3	3	3	3	3	3	3	19	19	12	3	3	7
16	16	16	16	16	19	19	3	3	3	3	3	3	3	19	19	3	3	3	7
16	16	16	16	16	16	16	19	19	19	19	19	19	14	14	14	14	14	14	14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5**

교과서 속, 법으로 사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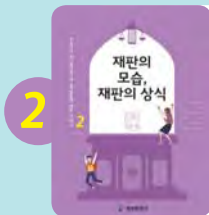
발 행 일	1판 1쇄	2019. 10.
	1판 2쇄	2020. 08.
	1판 3쇄	2021. 12.
집 필 진	연 구 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박성혁(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공동연구자		곽한영(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김자영(공주교육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김현철(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지윤(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연구보조자	김경래(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
		이수진(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
		전진현(신반포중학교 교사)
		황선영(서창고등학교 교사)
발 행 처	법원행정처	
	T) 02.3480.1262	
	F) 02.593.2641	
디자인/인쇄	(주)홍디자인	02.464.5167
인 쇄	(주)마이컴피앤씨	02.2273.6153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원 이야기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여러 사건과 인물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법제도의 영향력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지만, 법과 사법제도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사법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해 법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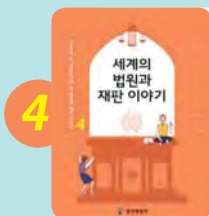
재판의 모습, 재판의 상식

법을 적용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차를 재판이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을 비롯해 재판의 판단 원칙, 종류, 절차 등 다양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준비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읽다 보면 학교에서 배운 재판 이야기가 쏙쏙 이해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변화시킨 재판 이야기

판례란 법을 통해 해결한 여러 사건의 결과를 모은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례를 통해 법이 어떻게 갈등을 풀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왔는지 알아봅시다. 책에서 소개한 판례의 의미를 친구와 함께 토론하다 보면 법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 세질 것입니다.



세계의 법원과 재판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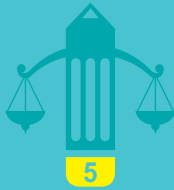
세계 각국은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고유의 법을 만들어 정의를 구현해 왔습니다. 물론 인간의 존엄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은 만국 공통일 것입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법과 법원, 재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봅시다.



교과서 속, 법으로 사는 세상

우리는 법으로 만들어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집, 학교 어디서든 우리는 법과 만나는 다양한 경험을 하며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본권의 보장과 법', '일상 생활과 법', '청소년 생활과 법' 이 세 가지 주제로 우리 삶과 뗄 수 없는 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재판과 법원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그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만든 법교육 교재입니다. 대법원 및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위 책자의 원문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교과서 속, 법으로 사는 세상

